

위치	오류유형	수정 전	수정 후
641~641p ① 특정채권 박스 안 판례	개념,공식-설명	(1) 특정채권: 특정채권 그 자체의 보전을 위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1] 양도인이 제3자에게 부동산을 이중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줌으로써 양수인이 양도인에 대하여 취득하는 손해배상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부동산을 양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양도인이 제3자에게 이를 이중으로 양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양도인이 제3자에게 이를 이중으로 양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줌으로써 취득하는 부동산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은 이중암도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민법 제405조에 의하면 채권자가 체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고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채무자가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채무자가 자기의 채권이 채권자에 의하여 대위행사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그 처분을 가지고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대판 1999.4.27. 98다)5669이).	① 특정채권 : 특정채권 그 자체의 보전을 위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1] 양도인이 제3자에게 부동산을 이중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줌으로써 양수인이 양도인에 대하여 취득하는 손해배상채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부동산을 앙도받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양도인이 제3자에게 이를 이중으로 양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줌으로써 취득하는 부동산 가액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은 이중안도행위에 대한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채권자취소권을 특정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부동산의 제1양수인은 자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하여 양도인과 제3자 사이에서 이루어진 이중양도행위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대판 1999.4.27. 98다56690).
973~973p (2) 산정의 기준시기 ①	오타	(2) 산정의 기준시기 ① 일반적으로 불법행위시를 기준으로 배상액을 산정한다. 불법행위 후 목적물의 가격등귀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의한 손해는 예견가능성이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인정된다. 다만, 불법행위시와 결과 발생시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완성된 시점인 손해배상시가 손해액 산정의 기준시점이 된다.	(2) 산정의 기준시기 ① 일반적으로 불법행위시를 기준으로 배상액을 산정한다. 불법행위 후 목적물의 가격등귀와 같은 특별한 사정에 의한 손해는 예견가능성이 있었던 경우에 한하여 배상책임이 인정된다. 다만, 불법행위시와 결과 발생시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완성된 시점인 <mark>손해발생시가</mark> 손해액 산정의 기준시점이 된다.

도서의 오류로 학습에 불편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더 나은 도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시대교육그룹이 되겠습니다.